

07 『거레당사자』와 FTA 활용 사례

글/김덕연연구원_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레당사자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거레당사자리해는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이 때의 「수출자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수출자(매도인)」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다양한 거래들을 예로 들어 해당 거래에서 FTA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무역거래형태에 따른 FTA활용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로, 관련 의무를 지닌 자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거레당사자」 요건이 있다. FTA에서 수출자는 당사자인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가 FTA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협정에서 정하는 체결국에 소재하는 당사자가 아닌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기타 경우에도 FTA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존재한다.

/ <그림 1> FTA 특혜관세 적용 위한 수출자와 수입자 /



가능한 무역거래형태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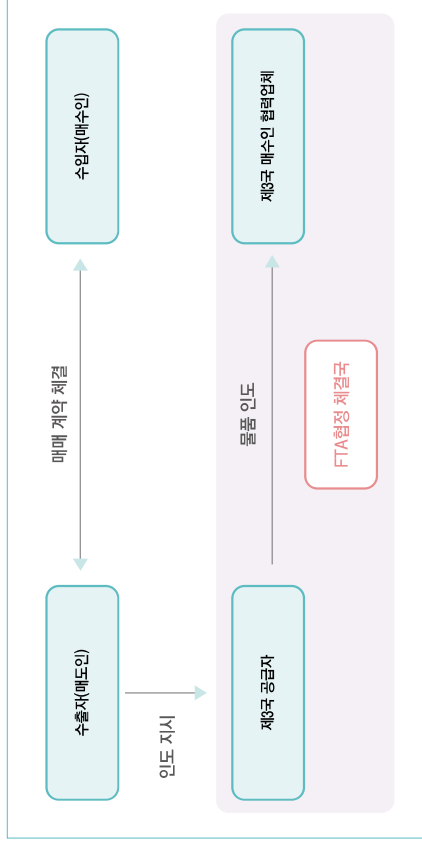
1. 외국인도 수·출입

매매계약상상의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가 FTA체결국 내 존재하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지정한 제3국의 물품 공급자와 매수인이 지정한 제3국 기업이 속한 국가가 FTA체결국인

경우 매수인의 협력 업체는 FTA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매도인이 지정한 제3국의 물품 공급자는 해당 매수인의 협력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결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공급해야한다.

/ <그림 2> 외국인도 수출입 거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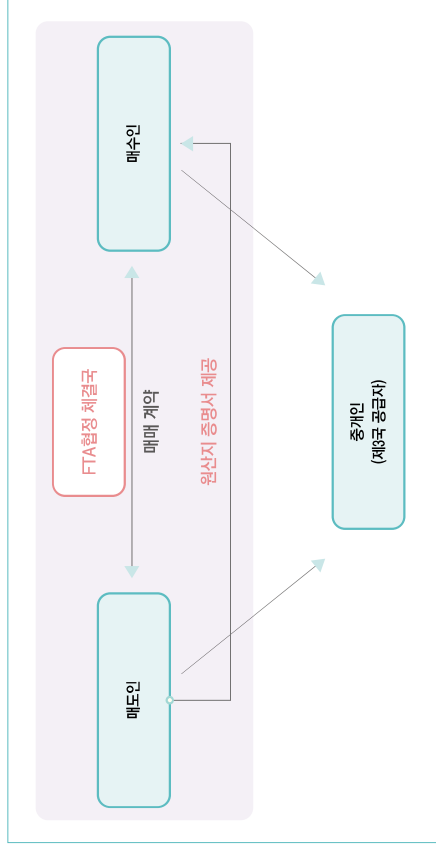


2. 중개무역

노출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FTA체결 당사국이라면 FTA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중개무역은 중개인이 매매계약상의 수출자(매도인) 과 수입자(매수인)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이다. 이때 거래 당사자의

/ <그림 3> 중개무역 수출입 거래 예시 /



거래 예시 1

A사와 B사는 플랜트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기계 등 주요 설비들을 직접 미국으로 운송 하 하였다. 매매계약의 수출자(매도인) A사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입자(매수인) B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기업이다. 최근 B사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필요한 설비를 A사로 부터 공급 받기로 하였다.

A사가 미국으로 수출할 매매계약상의 계약 물품 이에 따라 한국의 A사는 매매계약에 따라 기

/ <표 1> A사와 B사의 매매계약 대상품 /

품명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1 원자로	8401.10-0000	CTSH
2 원자로의 부분품	8401.40-0000	CTSH
3 수평보일러(45Ton 이상)	8402.11-0000	CTSH and EU35% / BD45%
4 공기조절기	8415.81-0000	CTSH
5 압축공기식 모터	8412.80-0000	CTSH
6 노	8417.80-2000	CTSH

A사는 B사가 발행한 양도신용장을 이용하여 설비 구성품의 조달을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 하고,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공이 가능 한 원재료¹³⁾에 대해 양도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여 수입자의 미국 현지공장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때, A사는 한국에서 선적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관련 서류를 B사에 제공하였고, B사는 이를 미국 현지 법인에 인도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서 수입자 B사의 미국 법인은 캐나다와 중국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선적된 물품에

13) 한-미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 기정함
14) NA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 기정함